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전염병원등”을 “감염병원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·유치원·어린이집”을 “·유치원·어린이집·다함께돌봄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(유치원 및 어린이집은”을 “(유치원,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”으로 한다.

제39조 중 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각목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)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

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
2. 유치원 설치에 관한 제5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· 2. 삭제 3. (생략) 4. “의료시설”이라 함은 의원 · 치과의원 · 한의원 · 조산소 · 보건소지소 · 병원(<u>전염병원등</u>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 ·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. 5. ~ 9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<u>감염병원등</u> ----- -----. 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) ① 공동주택 · 어린이놀이터 · 의료시설(약국은 제외한다) · <u>유치원 · 어린이집</u> 및 경로당(이하 이 조에서 “공동주택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(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)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(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	제9조의2(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) ① ----- ----- · <u>유치원 · 어린이집 · 다함께돌봄센터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(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법 목적을 위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해야 한다.

제52조(유치원)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(유치원, 어린이
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
항 제2호 각 목 -----

제52조(유치원) ①-----

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</u> <u>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</u> <u>고 인정하는 경우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897